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54
----------	-------

발의연월일 : 2025. 10. 2.

발 의 자 : 이강일 · 강준현 · 김남근
김문수 · 김우영 · 김현정
민병덕 · 박정현 · 이연희
이용우 · 이인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배달앱, 쿠팡머스 등 온라인 배달플랫폼을 통한 음식 및 생활 물품의 거래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배달플랫폼의 높은 배달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불투명한 배달비 산정 구조로 인한 신뢰 훼손이나 배달종사자의 권익 침해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해당 산업에 대하여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일부 규율하고 있지만, 배달플랫폼 특유의 구조적인 문제를 충분히 규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나 배달비 부담 전가, 배달종사자 보호 공백 등의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배달플랫폼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공정한 시장 체계를 확립하고 배달종사자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며 배달플랫폼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배달플랫폼 사업자, 입점업체, 배달종사자, 소비자 등을 정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나.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의 상한을 정하고 영세·중소 입점업체에 대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다.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배달비의 최저 및 최고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산정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 및 배달종사자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각각 마련하고, 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안 제9조).
- 마.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험 가입 지원, 휴식 보장 및 적정 배달 환경 조성 및 안전 조치 강화 등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바. 배달플랫폼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배달플랫폼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의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제출 및 출석, 답변 요구 등의 조사 권한을 부여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아.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중개수수료나 배달비 등 제한 기준의 위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하여 매출액의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8조).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배달플랫폼을 통한 음식배달 및 신속배송 서비스 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배달플랫폼사업자·입점업체·소비자·배달종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달”이란 소비자가 주문한 음식 또는 생활물품(이하 “배달상품”이라 한다)을 근거리에서 즉시 또는 단시간 내에 배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배달플랫폼”이란 배달상품의 주문, 결제 및 배달을 중개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거래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배달플랫폼 사업자”란 배달플랫폼을 통해 배달상품의 주문, 결제 및 배달을 중개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입점업체”란 배달플랫폼 사업자를 통하여 배달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배달종사자”란 배달플랫폼 사업자 또는 입점업체의 요청에 따라 배달상품을 배송하는 자를 말한다.

6. “소비자”란 배달플랫폼 사업자를 통하여 배달상품을 주문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배달플랫폼 거래에 적용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중개 거래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3. 일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자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배달플랫폼 거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중개수수료 등의 상한) ①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의 총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상한 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거래금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세·중소의 입점업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종별·매출규모별·지역별로 상한 비율의 차등을 둘 수 있다.

③ 배달플랫폼 사업자는 새로운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여 제1항의 상한제를 회피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배달비의 상·하한) ①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배달종사자에게 배달업무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배달비”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과 하한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리, 시간대, 지역, 기상 여건, 배달 난이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배달비의 상한과 하한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배달비 상·하한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달종사자의 적정 수입 보장과 소비자의 부담 완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배달비 산정 근거의 공개) ① 배달플랫폼 사업자는 배달비 산정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 대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비자의 부담액
2. 입점업체의 부담액
3.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취득한 금액
4. 배달종사자에게 지급된 금액
5. 배달비 산정에 적용된 거리, 시간대, 기상 여건 등의 요소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달비 공개

방식을 표준화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배달비 부담 구조) ① 배달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배달비 부담 구조를 합리적으로 구성한 다양한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배달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의 서비스 상품 선택권을 박탈하거나 배달비의 부담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입점업체 단체는 배달비 산정 및 부담 구조에 관하여 단체 협의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④ 제3항에 따른 단체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배달플랫폼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단체 협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거래에서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입점업체와 배달종사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각각 마련하고, 배달플랫폼 사업자 및 입점업체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수료율, 광고비, 배달비와 그 산정 근거
2. 계약 해지의 사유 및 절차
3. 분쟁의 해결 방법 및 절차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배달플랫폼 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정보 공개 의무) ① 배달플랫폼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배달플랫폼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의 부과 기준 및 산정 방식
3. 배달비 산정 기준 및 방식
4. 소비자, 입점업체, 배달종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배달플랫폼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입점업체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2. 입점업체에게 자기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부담하게 회피하는 행위
3. 입점업체에게 광고 등의 거래를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위
4. 배달종사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배달비를 지급하는 행위

5. 소비자에게 배달비 등의 내역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6. 그 밖에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배달종사자의 권익 보호) ① 배달플랫폼 사업자는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지원

2. 배달종사자의 휴식 보장 및 적정 배달 환경 조성

3. 기상특보 발령 시 배달 서비스 제한 또는 안전 조치 강화

4. 그 밖에 배달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배달플랫폼 사업자는 배달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1항에 따른 안전 사항의 준수 현황을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배달종사자 평가제도 운영) ① 배달플랫폼 사업자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평가 기준 및 방법의 공개

2.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3. 부당한 평가로 인한 불이익 방지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배달플랫폼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제도 운영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소비자 정보제공) ① 배달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입점업체의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2.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할인 내용, 배달비 등 최종 결제금액의 구성 내역

3. 예상 배달 소요시간 및 배달 현황

4. 소비자 불만 처리 및 분쟁해결 절차

5.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소비자 피해보상) ① 배달플랫폼 사업자는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배달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가입 또는 보증금 예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분쟁조정위원회) ① 배달앱 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배달플랫폼 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2.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판사·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5. 배달종사자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6. 입점업체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배달플랫폼 거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소속 기관이 당사자와 자문·고문 관계에 있는 경우
4. 위원 또는 소속 기관이 해당 사건에 관해 대리·증언·감정을 한 경우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분쟁조정의 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사유와 기한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분쟁조정의 효력)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은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3조(「민사조정법」의 준용) 조정과 관련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24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배달플랫폼 사업자에게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보완 요구를 문서로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25조(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달플랫폼 사업자, 입점업체, 배달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사무소, 영업소, 창고, 서버 등을 방문하여 장부, 서류, 전산자료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벌칙)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등의 상한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
2. 제6조를 위반하여 배달비의 상한을 초과하거나 하한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한 자
3.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배달비 산정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자
 4. 제12조를 위반하여 배달종사자의 권익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5. 제14조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
 6. 제15조를 위반하여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
 7.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8.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비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제16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체결된 계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